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8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개정

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근거 확보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에 대한 설명 신설(안 제2조제9호,제10호)

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변경과 법령기준 적용으로 불필요한 근거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

다. 자전거보관소 · 대여소 설치 ·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라.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 운영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마. 자전거이용자 참여 행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바. 자전거활성화 업무 위탁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02월 24일 ~ 03월 14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도로관리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전거 대여소” 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자전거 수리센터”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5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전거 보관소 · 대여소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 대여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 · 대여소는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3(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3(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2. 자전거 보관소의 관리·운영
3. 자전거 대여소의 관리·운영
4.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

5. 자전거 안전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설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건설과장 한상용
	팀장 직위 · 성명	도로보수팀장 정황근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김영범 (790-516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9.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0.“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

	소에 자전거 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대여소는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자전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2. 자전거 보관소의 관리·운영 3. 자전거 대여소의 관리·운영 4.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 5. 자전거 안전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금품제공 기준(제15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심사 또는 추첨	10만원 이하	120만원 이내	12회 이내

관계법령 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잔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자전거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영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